

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(도시계획과 ☎032-760-7516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4. 11. 6.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(시설: 도로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297-6번지 일원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11	10	집산 도로	672	무의동 297-6	무의동 산10-14	일반 도로	큰무리 마을	중구고시 제2003-15호 (2003.04.08)	
변경	중로	3	330	12	집산 도로	672	무의동 297-6	무의동 산10-14	일반 도로	큰무리 마을	-	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1-11호선	중로3-330호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폭원 확장 - 10m → 12m(증 2m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인접구 간 건축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, 당초 편측보도에서 양측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형 및 폭원을 변경하여 무의지역에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• 또한, 도로 조성으로 발생하는 법면 등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함으로써, 효율적인 도시 계획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4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